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회수절차 강화〉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61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회수절차 강화(안 제9조, 제34조 및 제36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2. 9.

다.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Ⅲ. 검토의견

1.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회수절차 강화(안 제9조, 제34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31②) - (생략) (제1호~제5호) < 신설 > - (생략) (제6호~제10호) ○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34) - (생략) (제1항 및 제2항) < 신설 > ○ 공고(§36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각 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생략) (제1호~제4호) < 신설 >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31②) - (생략) (제1호~제5호) -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제5조의2호) - (생략) (제6호~제10호) ○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34) -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 - 공사는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내역 (조기회수내역 포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경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공고(§36②) (현행과 같음) - (생략) (제1호~제4호) -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 회수내역(제5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KIC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¹⁾

1)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안은 현행 협의 규정만으로는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인식 아래, ①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②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③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KIC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자산 운용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²⁾ 특히 2022년은 KIC의 위탁자산 운용수익률이 음의 값(-14.36%)을 기록한 해로서, 운용수익 회수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시장 반등기에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재정경제부는 최근 두 차례의 회수는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으로, KIC 운용수익 등 외환보유액이 적기에 유동화될 수 있어야만 외환시장 안정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2022년 10월 60억 달러, 2025년 6월 30억 달러

첫째, KIC 위탁자산의 중장기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국부펀드로서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임의적인 회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KIC에 위탁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재원은 유동성을 위해 직접 운용하고, 중장기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재원을 주로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KIC 위탁자산은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등의 용도로 운용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³⁾

이처럼 KIC 위탁자산은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임의적인 수익의 회수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에도 사전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운용수익의 회수 시 KIC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통상적인 투자신탁 관계에서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산을 신속·용이하게

3)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2020. 3. 31.>
4.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⑥ (생략)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관행과 배치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공기관인 KIC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절차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사적 계약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위탁자산의 회수 관행을 공공 목적으로 운용되는 국부펀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회수가 위탁자산(원금)이 아니라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이므로, 협의 절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임.

[연도별 운용수익 현황(단위: 억 달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위탁원금	950	1,000	1,026	1,081	1,121	1,171	1,171	1,176	1,186	1,186
연말 기준 순자산가치	1,108	1,341	1,316	1,573	1,831	2,050	1,693	1,894	2,065	2,320
운용수익 지급액							60			30
연도별 수익률	4.35	16.42	-3.66	15.39	13.71	9.13	-14.36	11.59	8.49	13.91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이는 명목원금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및 재투자율 통한 복리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2022년에는 14.36%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운용수익의 지급이 자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점의 손익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KIC 운영위원회의 의결보다는 해외 주요 국부펀드의 사례와 ‘산티아고 원칙’을 참고하여 KIC 운용자산에 대하여도 운용수익 회수의 객관적인 원칙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인 KIC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상⁴⁾ 정부 측 영향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 의결이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안으로 운용수익 회수와 관련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바,

일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⁵⁾)의 경우, 정부는 기금 자산 가치의 연평균 예상 실질수익률인 3% 내외에서만 정부 예산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금의 실질가치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⁶⁾

4)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고, 당연직 위원 3명은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임.

5)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은 운용규모, 투명성, 재정준칙(기대 실질수익률 기반 지출) 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국부펀드로 평가되며, 국부펀드 운용의 대표적 기준 사례로 활용됨.

6) “The fiscal policy guideline links the spending of Fund assets over time to the expected real rate of return on the GPFG, which is estimated to be 3 percent. The national budgets have in recent years indicated that withdrawals should in normal years, which will be most years, be well below 3 percent. This is implied by the need for extra savings that can be drawn down in the event of major economic downturns or a large decline in Fund value.”

- Meld. St. 22 (2024 - 2025) Report to the Storting (white pape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2025

(번역) 재정운용 준칙은 기금 자산의 사용을 장기적으로 GPFG의 기대 실질수익률에 연동시키고 있으며, 해당 수익률은 약 3%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국가예산에서는 기금 인출이 평상시,

싱가포르는 헌법에 근거한 순투자수익 기여제도(NIRC⁷⁾)에 따라, 정부가 국부자산(GIC, Temasek, MAS)이 창출하는 장기 기대 실질수익의 최대 50%까지만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⁸⁾

한편, IMF와 주요 국부펀드들의 운용 가이드라인인 “산티아고 원칙⁹⁾”에 따르면, 국부펀드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재무적·경제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¹⁰⁾ 자원 조달 및 지출 또한 예측 가능한 규칙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¹¹⁾

현행처럼 운용수익 회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와 KIC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산티아고 원칙이 지향하는 운용 독립성 및 규

즉 대부분의 경우에 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이는 경기의 중대한 침체나 기금 가치의 큰 하락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 Net Investment Return Contribution

8) “The annual 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NIRC) amount is published in the Government’s annual Budget. NIRC comprises: Up to 50% of the Net Investment Returns (NIR) on the net assets invested by GIC, MAS, and Temasek; and Up to 50% of the Net Investment Income

(NII) derived from past reserves from the remaining assets.”

-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NIRC)” 홈페이지

(번역) 연간 순투자수익 기여금(NIRC)은 정부의 연례 예산에 공표된다. NIRC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GIC, 싱가포르 통화청(MAS), 테마섹이 운용하는 순자산에서 발생한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Returns)의 최대 50%

과거 축적된 국가자산(잔여 자산)에서 발생한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의 최대 50%”

9) 2008년 IMF와 주요 국부펀드들이 마련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및 관행(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Practices, GAPP)’으로 구성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국부펀드의 투명성, 거버넌스 및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함.

10) GAPP 19, The SWF’s investment decisions should aim to maximize risk-adjusted financial return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investment policy, and based on economic and financial grounds.

11) GAPP 4, There should be clear and publicly disclosed policies, rules, procedures, or arrangements in relation to the SWF’s general approach to funding, withdrawal, and spending operations.

칙 기반 운영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 법령 등을 통하여 운용수익 회수의 장기적인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 회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운용수익 회수내역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투기세력의 원화 투매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이며,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여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우려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경우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 ② (생략)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공사는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 내역(제30조에 따른 조기회수내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36조(공고) ① (생략)	제36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내역</u>

문 의 처
02)6788-5148